

의 안 번 호	제 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2020. . (제 회)	

연구 개발 특 구 의 육 성 에 관 한 특 별
법 시 행 령 일 부 개 정 령 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0.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20.6.9.)에 따라 법에서 시행령으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법 운용과정에서 발굴된 제도개선 과제를 반영하기 위하여 시행령을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실증특례 전문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규정 마련(제9조의2, 제9조의3, 제10조제3항 신설)

1) 연구개발특구위원회의 실증특례 지정 등을 지원하기 위한 사전 심의·의결기구로 연구개발특구 실증특례 전문위원회(이하 “실증특례 전문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하도록 하고 실증특례 전문위원의 자격 요건 및 의결·재의결 정족수 등 실증특례 전문위원회의 운영 절차를 규정함.

2) 연구개발특구위원회의 위원 및 실증특례 전문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요건을 규정하여 신청된 실증특례에 대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

3) 실증특례 전문위원회의 심의 과정에서 신기술 및 규제 업무와 관련된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의 의견 청취를 의무화하고,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의 의견 또한 청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실증특례 심의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도록 규정함.

나. 실증특례 신청 절차 마련(제19조의2 신설)

1) 실증특례 신청 자격의 범위를 공공연구기관뿐만 아니라 민간기업까지 규정함으로써 다양한 성격의 주체가 실증특례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함.

2) 실증특례를 신청하려는 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의 범위 및 보완 절차 등을 규정함.

다. 실증특례 심사 기준·절차 및 지정서의 발급 규정 마련(제19조의3, 제19조의4 신설)

1) 신기술 실증 범위·방법의 구체성, 신청자의 재정적·기술적 능력, 실증 신기술의 혁신성 및 파급효과, 이용자 등의 보호 방안 등 실증특례 지정에 적용되는 세부 심사기준을 마련함.

2) 실증특례 전문위원회의 사전 의결 결과 통지 의무를 규정하고, 신청자에게 이의신청 및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며, 이의신청을 통해 실시된 실증특례 전문위원회의 재의결시 실증특례 기간을 축소(6개월

이내)하고 추가 조건을 부가하여 연구개발특구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가급적 신기술 실증특례가 시행될 수 있도록 하는 친화적 규정을 마련함.

3) 실증특례 지정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을 규정하고, 실증특례 지정 시 신기술의 이용자 등이 있을 경우 실증 시작 전 이용자 고지 의무 및 고지 내용 등을 규정함.

라. 실증특례에 따른 책임보험 등(제19조의5 신설)

실증특례의 지정을 받은 자가 인적·물적 손해를 발생할 위험이 있는 경우 책임보험을 가입하도록 하고, 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별도 손해배상방안을 마련하도록 규정하였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로 정하도록 함.

마. 실증특례 기간의 연장·변경 및 관리 감독과 사후 법령 정비 등 (제19조의6부터 제19조의9까지 신설)

1) 실증특례의 유효기간 및 유효기간의 연장 또는 변경을 위한 서류 및 절차를 규정하였고, 특히 변경의 내용이 부가 조건 변경인 경우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도록 규정함.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관계기관의 장이 실증특례 지정을 받은 자의 계획 이행 여부 등을 감독할 수 있도록 규정함.

3) 실증특례 결과보고서에 포함하여야 할 내용 및 제출 의무를 규정

하고, 관계기관의 장이 대상 규제 관련 법령정비를 완료하면 이를 지체없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 통보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를 실증특례의 지정을 받은 자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함.

바. 실증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제19조의10 신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특구에서 신기술 실증 활성화를 위해 규제 정보 제공, 시험·검증에 필요한 기반 조성, 법적·회계적 지원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등 전문기관·단체 등이 관련 지원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함.

사. 실증특례 지정 취소 및 일시 중지 절차 등(제19조의11, 제19조의12 신설)

- 1) 실증특례의 지정을 받은 자가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관련 규정을 마련함.
- 2) 실증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생명·안전에 위해가 발생하거나 현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실증특례 전문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해당 신기술의 이용 또는 제공 등에 대한 일시적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관련 규정을 마련함.

아. 실증특례 관련 법령 위반시 과태료 부과 기준 마련(제44조 관련 별표 9 개정)

실증특례의 부가조건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실증특례 결과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거나 별도의 손해배상방안 마련을 하지 않은 경우, 일시적 중지 등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 실증특례 취소 이후에도 해당 신기술을 이용·제공 등을 한 경우 등 실증특례 관련 절차 위반에 대하여 과태료 금액을 신설함.

자. 재투자 해야 되는 개발이익의 범위 완화(제27조의2 개정)

- 1) 국무조정실 주관의 일몰규제 정비 시, 특구개발사업 시행 시 사업시행자가 재투자해야 하는 개발이익의 범위가 높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규제개선이 필요함.
- 2) 현행 특구개발사업 개발이익의 25/100~50/100 범위 내에서 기반시설 설치, 연구·산업용지의 분양가 인하 등에 재투자하도록 하던 것을 20/100~25/100범위로 완화하도록 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부처 협의 중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0. 9. 21. ~ 11. 2.)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실증특례”란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과정 중 신기술 실증을 위하여 관련 규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규제 특례를 말한다.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5조의2제2항”을 “법 제5조의2제3항”으로 한다.

제8조제3항 중 “위촉위원은 연구개발·환경·외국인투자·기술사업화·기업경영·도시정책 등 특구와 관련된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위촉한다.”를 “위촉위원은 연구개발·환경·외국인투자·기술사업화·기업경영·도시정책 등 특구와 관련된 분야와 신기술 실증 및 관련 규제 전문가 중에서 위촉한다.”로 한다.

제9조제6항 중 “간사는 법 제7조제6항에 따른 사무기구(이하 “사무기구”라 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임명한다.”를 “간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3급 이상의 공무원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임명한다.”로 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실증특례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7조제7항에 따라 위원장은 실증특례 지정, 유효기간 연장, 변경 등에 관한 제반사항을 검토하고 예비적으로 심의·의결하는 연구개발특구 실증특례 전문위원회(이하 “실증특례 전문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실증특례 전문위원회는 위원장(이하 “실증특례 전문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이하 “실증특례 전문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고, 실증특례 전문위원장은 실증특례 전문위원 가운데서 전문지식과 경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실증특례 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며, 간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4급 이상 공무원으로 한다. 이때, 다음 각 호별 위원의 구성비는 위원장이 정한다.

1. 기업 및 연구개발기관에서 규제 및 신기술 연구개발 관련 업무에 종사한 자 중에서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2. 신기술 및 규제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수, 변호사, 기술사 등 전문가 중에서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3. 그 밖에 신기술의 경제적·사회적 영향 등을 고려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실증특례 전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⑤ 실증특례 전문위원회 회의는 실증특례 전문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이하 “사전 의결”이라 한다)하며, 실증특례 전문위원장 및 간사는 의결권을 보유한다.
-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실증특례 전문위원회는 실증특례 지정 관련 사전 의결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심의·의결하는 재심의 회의의 경우, 실증특례 전문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실증특례의 지정을 사전 의결(이하 “재심의 사전 의결”이라 한다)할 수 있다. 단, 실증특례 유효기간은 최대 6개월 이내로 정하고 기타 필요한 조건을 부가하여 재심의 사전 의결하여야 한다.
- ⑦ 제6항에 따른 재심의 사전 의결을 거쳐 제9조제5항에 따른 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지정된 실증특례의 유효기간이 종료될 시, 실증특례 전문위원회는 법 제16조의2에 따른 기간 범위 내에서 실증특례 유효기간 연장 여부에 대해 제5항에 따라 사전 의결하여야 한다.
- ⑧ 실증특례 전문위원장은 제5항, 제6항에 따른 실증특례 전문위원회의 의결 결과를 위원회에 상정해야 한다.
- ⑨ 실증특례 전문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신청된 실증특례 분야별·사안별로 심층 검토를 위해 검토위원회를 둘 수 있다. 검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구체적 절차는 위원장이 정한다.
-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증특례 전문위원회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 보고를 거쳐 위원장이 정하되,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3,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제38조의2 및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86조의 절차에 따른 규제특례와 연계하여 효율
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제9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3(위원회의 위원 및 실증특례 전문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제8조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 및 제9조의2에 따른 실증특례 전문위
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
· 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회의 위원, 실증특례 전문위원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
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
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회의 위원, 실증특례 전문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
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회의 위원, 실증특례 전문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
술, 자문, 연구, 용역, 조사 또는 감정(鑑定)을 한 경우
4. 위원회의 위원, 실증특례 전문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속한 법인·단체 등에 재직한 경우
5. 위원회의 위원, 실증특례 전문위원 본인 또는 본인이 속한 법인·단
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회의 위원, 실증특례 전문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忌避)를 신청할 수 있고, 위원회의 위원, 실증특례 전문위원은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 때 기피 신청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회의 위원, 실증특례 전문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④ 위원장은 위촉한 위원회의 위원, 실증특례 전문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회의 위원, 실증특례 전문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회의 위원, 실증특례 전문위원이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위원회의 위원, 실증특례 전문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10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실증특례 전문위원회는 실증특례 지정 여부 등에 관한 제반사항 검

토, 사전 의결 및 이의신청에 따른 재심의 사전 의결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 대상 신기술 및 규제 업무와 관련된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며, 사전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해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1조 중 “위원회의 위원”을 “위원회의 위원 및 실증특례 전문위원”으로 한다.

제12조는 삭제한다.

제12조의3제1항에 제2호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한”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으로 한다.

제12조의3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법 제16조의2제3항에 따라 실증특례를 지정 받은 기술 및 이를 통해 생산된 제품 및 서비스

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실증특례의 신청) ① 법 제16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써 실증특례 신청일 기준 연구소, 교육시설, 본사, 영업소, 생산공장 등 기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연구개발특구 내에 소재한 자를 말한다.

1.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연구개발기관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및 그 외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관·단체로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

② 실증특례를 신청하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실증특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실증특례에 관한 다음 각 목의 내용을 포함한 실증특례 계획서

가. 실증특례 대상이 되는 신기술의 명칭 및 내용

나. 신기술 실증의 범위, 추진방법, 추진일정

다. 신기술 실증을 위하여 필요한 규제특례의 내용, 기간 및 관련 법령

라. 실증특례 신청자의 재정적·기술적 능력

2. 신청한 실증특례가 법 제16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설명하는 자료

3. 실증특례 신기술의 이용자 및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자(이하 “이용자 등”이라 한다)의 존재여부, 대상, 규모 및 보호 방법 등을 포함한 실증특례 안전성 확보 계획서

4. 그 밖에 실증특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요구하는 자료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 내용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 따른 신청(제3항에 따라 보완된 경

우를 포함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증특례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1. 신청내용이 법 제16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한 경우
2. 제2항의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3항에 따른 보완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증특례 신청 내용이 작성된 것이 명백한 경우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내용을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하며, 관계기관의 장은 통보를 받은 해당 신청내용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30일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문서로 회신해야 한다. 다만, 관계기관의 장이 신청내용을 검토하기 위하여 실증특례를 신청한 자에게 보완을 요구한 경우 보완에 걸린 기간은 해당 기간에 산입하지 않되 이 경우에도 90일 이내에는 검토결과를 회신해야 한다.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실증특례 신청 내용이 이전에 승인된 실증특례 내용과 동일·유사한 경우 실증특례 지정까지의 기간을 단축하고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으며, 관계기관의 장은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증특례의 신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다.

제19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3(실증특례 심사 기준 및 절차 등) ① 법 제16조의2제9항에 따른 실증특례의 세부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다.

1. 신기술 실증 범위 및 실증 방법의 구체성
2. 신청자의 재정적·기술적 능력
3. 실증 신기술의 혁신성 및 파급효과 등
4. 실증 신기술의 이용자 등의 보호 및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처리 방안
5. 실증 신기술이 국민의 생명·안전·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
6. 그 밖에 전문위원회가 해당 신기술에 대한 실증의 특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법 제16조의2제8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과 기술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란 법 제2조제5호에서 정의된 공공연구기관,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서비스 신고기업과 그 밖에 실증특례의 지정을 위한 시험 및 검사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 및 기술을 갖추었다고 위원회가 인정한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③ 실증특례 전문위원회는 제9조의2제5항에 따른 사전 의결 결과를 사전 의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문서로써 알려야 한다. 이 때

부결시에는 부결의 사유 역시 함께 알려야 한다.

- ④ 신청자는 사전 의결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부결의 사유에 따른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 ⑤ 실증특례 전문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의신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의 사전 의결을 하여야 한다. 이 때 재심의 사전 의결 결과는 재심의 사전 의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문서로써 알려야 하며, 재심의 사전 의결 결과에 대해서는 이의신청할 수 없다.
- ⑥ 실증특례 전문위원회는 제5항에 따른 재심의 회의를 함에 있어 이의 신청자에게 의견진술 등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전문가, 관련 부처의 공무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 및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실증특례의 신청, 통지 및 세부 심사기준, 이의신청 절차, 이용자 등에 대한 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다.

제19조의4(실증특례의 지정서의 발급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6조의2제3항 전단에 따라 실증특례의 지정을 받은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실증특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하며, 그 사실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

고해야 한다.

1. 지정번호 및 지정 연월일
2. 상호(명칭) 및 대표자 성명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지정 대상 기술의 명칭
5. 실증특례 수행 지역
6. 실증특례의 주요 내용
7. 유효기간
8. 지정 조건

② 실증특례의 지정을 받은 자는 해당 신기술의 이용자 등이 있을 경우 법 제16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실증 시작 전에 이용자 등에게 알려야 한다.

1. 실증특례 대상인 신기술의 명칭 및 내용
2. 실증특례를 위한 구역·기간 및 규모
3. 법 제16조의2제3항 후단에 따라 안전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붙인 조건
4. 책임보험 또는 손해에 대한 배상 방안의 내용

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실증특례의 지정서 발급 절차 및 내용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다.

제19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5(실증특례에 따른 책임보험 등) ① 실증특례의 지정을 받은 자 중 해당 신기술의 실증 과정 중 이용자 등에게 인적·물적 손해를 발생할 위험이 있는 경우 법 제16조의3제7항 본문에 따른 책임보험 등의 가입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를 신기술의 실증 시행 전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실증특례의 지정을 받은 자가 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고 실증특례를 시행하기 전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별도 협의를 통해 손해에 대한 배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1. 책임보험 가입이 불가능한 사유서

2.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배상기준·방법 및 절차를 포함한 이용자 손해배상계획서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인적·물적 사고에 대비한 손해배상의 범위 및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에 관해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9조의6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6(실증특례의 유효기간의 연장 등) ① 법 제16조의2제4항 전단에 따른 실증특례의 유효기간은 신청인의 신청기간 및 신청내용 등을 고려하여 2년 이내의 기간으로 한다.

② 법 제 16조의2제4항 후단에 따라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연장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그 사실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1. 실증특례 이용현황 및 활용 실적이 포함된 자료
2. 실증특례 연장 사유서 및 증빙서류
3. 제19조의3제7항에 따른 실증특례 지정서 사본
4. 책임보험의 보험기간 연장 서류 또는 손해배상 연장 계획서
5.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실증특례 연장의 타당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19조의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7(실증특례의 변경 등) ① 지정받은 실증특례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그 사실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1. 실증특례 이용현황 및 활용 실적이 포함된 자료
2. 실증특례 변경 사유서 및 증빙서류
3. 제19조의3제7항에 따른 실증특례 지정서 사본
4. 필요시 책임보험의 변경 서류 또는 손해배상 변경 계획서
5.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실증특례 변경의 타당성을 판단하

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 ② 제1항에 따른 변경이 법 제16조의2제3항 후단에 따른 부가 조건에 대한 변경일 경우, 실증특례의 지정을 받은 자가 규제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를 완료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이를 신고한 경우 실증특례의 지정을 받은 자는 위원회의 재의결을 생략하고 부가 조건을 변경하여 신기술에 대한 실증을 수행할 수 있다. 이때 신고의 내용, 절차 등 구체적인 내용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다.

제19조의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8(실증특례의 관리 및 감독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관계기관의 장은 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감독할 수 있다.

1. 실증특례 계획서 및 안전성 확보 계획서에 따른 계획 이행 여부
2. 실증특례 지정 조건의 이행 여부
3. 기타 실증특례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증특례의 관리 및 감독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다.

제19조의9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9(실증특례 결과보고 및 법령정비 등) ① 실증특례의 지정을 받

은 자는 법 제16조의3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결과 보고서를 증명자료와 함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관계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제출해야 한다.

1. 실증계획서에 따른 목적 달성 여부
2. 실증특례 지정조건 이행 여부
3. 신기술에 대한 실증 결과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관계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결과보고서와 증명자료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기간을 정하여 보완 및 추가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관계기관의 장은 법 제16조의3제4항에 따른 법령정비 착수 및 완료 사실을 지체 없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실증특례의 지정을 받은 자에게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이 마련되었다는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제19조의10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10(실증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특구에서 원활하게 신기술 실증이 수행될 수 있도록 법 제16조의4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포함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 업무를 발굴 및 시행하여야 한다.

1. 기술이전 시작단계에서 추후 기술사업화 과정 중 발생될 수 있는 규제를 사전 검토하여 정보 제공

2. 신기술 실증에 대한 시험·검증 등의 효율적 수행에 필요한 기반 조성
3. 신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법적·회계적 지원 및 지식재산권 보호
4.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신기술 실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하 "진흥재단"이라 한다), 제5조제3항제1호에 따른 "공공연구기관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 및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기관·단체로 하여금 법 제16조의4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위원회 및 실증특례 전문위원회의 사무보조
2. 법 제1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신청 및 제4항 후단에 따른 연장신청의 접수
3. 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관리·감독에 관한 업무 지원
4. 그 밖에 실증특례 관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게 한 경우 그 수행기관 및 수행업무를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각종 지원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의1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11(실증특례 지정의 취소) ① 실증특례의 지정을 받은 자가 법 제16조의5제1항제2호·제3호·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3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시정을 명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문서로써 하여야한다.

1. 법 제16조의5제1항제2호·제3호·제4호에 해당함을 알리는 내용
2. 시정명령 내용
3. 시정기간
4. 시정명령에 대한 불복 절차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시정명령의 대상이 되는 실증특례의 지정을 받은 자에게 사전에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6조의5제2항에 따라 실증특례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제19조의1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12(실증특례의 일시적 중지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6조의5제2항에 따라 실증특례의 지정을 받은 자가 실증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생명·안전에 위해가 발생하거나 현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실증특례 전문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해당 신기술의 이용 또는 제공 등에 대한 일시적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 등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다.

제24조제3항제13호 중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이하 “진흥재단”이라 한다)이”를 “진흥재단이”로 한다.

제27조의2제1항 중 “100분의 25 이상 100분의 50 이하”를 “100분의 20 이상 100분의 25 이하”로 한다.

제42조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법 제16조의2, 제16조의3, 제16조의4, 제16조의5에 따른 실증특례에 관한 업무

제43조는 삭제한다.

별표 9 제2호에 다~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다. 법 제16조의2제3항 후단을 위반하여 조건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1) 1차 위반행위를 한 경우 2) 2차 위반행위를 한 경우 3) 3차 이상 위반행위를 한 경우	법 제76조제2항제1호	3백5십만원 7백만원 1천만원
라. 법 제16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실증특례의 적용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관계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지 않은 경우 1) 1차 위반행위를 한 경우 2) 2차 위반행위를 한 경우 3) 3차 이상 위반행위를 한 경우	법 제76조제2항제2호	3백5십만원 7백만원 1천만원
마. 법 제16조의3제7항을 위반하여 책임보험에 가입하거나 별도의 배상방안을 마련하지 않은 경우 1) 1차 위반행위를 한 경우 2) 2차 위반행위를 한 경우 3) 3차 이상 위반행위를 한 경우	법 제76조제2항제3호	3백5십만원 7백만원 1천만원
바. 법 제16조의5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76조제2항제4호	

1) 1차 위반행위를 한 경우		3백5십만원
2) 2차 위반행위를 한 경우		7백만원
3) 3차 이상 위반행위를 한 경우		1천만원
사. 법 제16조의5제4항을 위반하 여 실증특례의 지정이 취소된 후에도 해당 신기술을 이용 또 는 제공 등을 한 경우	법 제76조제2항제5호	
1) 1차 위반행위를 한 경우		3백5십만원
2) 2차 위반행위를 한 경우		7백만원
3) 3차 이상 위반행위를 한 경우		1천만원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2. (생략) <u><신설></u>	제2조(정의) (현행과 같음) 1. ~ 2. (현행과 같음) 3. <u>“실증특례”란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과정 중 신기술 실증을 위하여 관련 규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규제 특례를 말한다.</u>
제6조(특구의 지정고시 등) ① (생략) ② 법 제5조제4항 및 <u>법 제5조의2 제2항</u> 에 따라 특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보에 고시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5. (생략)	제6조(특구의 지정고시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5조제4항 및 <u>법 제5조의2 제3항</u> ----- ----- ----- ----- ----- -----.
제8조(연구개발특구위원회의 구성) ① ~ ② (생략) ③ 법 제7조제5항에 따른 <u>위촉위원은 연구개발·환경·외국인투자·기술사업화·기업경영·</u>	제8조(연구개발특구위원회의 구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u>위촉위원은 연구개발·환경·외국인투자·기술사업화·기업경영·도시정</u>

도시정책 등 특구와 관련된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위촉한다.

④ ~ ⑤ (생략)

제9조(연구개발특구위원회의 운영)

① ~ ⑤ (생략)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법 제7조제6항에 따른 사무기구(이하 "사무기구"라 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임명한다.

<신설>

책 등 특구와 관련된 분야와 신기술 실증 및 관련 규제 전문가 중에서 위촉한다.

④ ~ ⑤ (현행과 같음)

제9조(연구개발특구위원회의 운영)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

-- 간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3급 이상의 공무원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임명한다.

제9조의2(실증특례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7조제7항에 따라 위원장은 실증특례 지정, 유효기간 연장, 변경 등에 관한 제반사항을 검토하고 예비적으로 심의·의결하는 연구개발특구 실증특례 전문위원회(이하 "실증특례 전문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실증특례 전문위원회는 위원장(이하 "실증특례 전문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이하 "실증특례

전문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고, 실증특례 전문위원장은 실증특례 전문위원 가운데에서 전문지식과 경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실증특례 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며, 간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4급 이상 공무원으로 한다. 이 때, 다음 각 호 별 위원의 구성비는 위원장이 정한다.

1. 기업 및 연구개발기관에서 규제 및 신기술 연구개발 관련 업무에 종사한 자 중에서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2. 신기술 및 규제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수, 변호사, 기술사 등 전문가 중에서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3. 그 밖에 신기술의 경제적·사회적 영향 등을 고려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실증특례 전문위원의 임기는 2

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다.

⑤ 실증특례 전문위원회 회의는
실증특례 전문위원 과반수의 출
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이하 “사
전 의결”이라 한다)하며, 실증특
례 전문위원장 및 간사는 의결
권을 보유한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실증특례
전문위원회는 실증특례 지정 관
련 사전 의결 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을 심의·의결하는 재심의
회의의 경우, 실증특례 전문위
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실증특례의 지정을 사전 의결
(이하 “재심의 사전 의결”이라
한다)할 수 있다. 단, 실증특례
유효기간은 최대 6개월 이내로
정하고 기타 필요한 조건을 부
가하여 재심의 사전 의결하여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른 재심의 사전 의
결을 거쳐 제9조제5항에 따른
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지정된

실증특례의 유효기간이 종료될 시, 실증특례 전문위원회는 법 제16조의2에 따른 기간 범위 내에서 실증특례 유효기간 연장 여부에 대해 제5항에 따라 사전 의결하여야 한다.

⑧ 실증특례 전문위원장은 제5항, 제6항에 따른 실증특례 전문위원회의 의결 결과를 위원회에 상정해야 한다.

⑨ 실증특례 전문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신청된 실증특례 분야별·사안별로 심층 검토를 위해 검토위원회를 둘 수 있다. 검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구체적 절차는 위원장이 정한다.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증특례 전문위원회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 보고를 거쳐 위원장이 정하되,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3,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제38조의2 및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

<신 설>

한 규제특례법」 제86조의 절차에 따른 규제특례와 연계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제9조의3(위원회의 위원 및 실증특례 전문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제8조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 및 제9조의2에 따른 실증특례 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회의 위원, 실증특례 전문위원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회의 위원, 실증특례 전문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회의 위원, 실증특례 전문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조사 또는 감정(鑑定)을 한 경우

4. 위원회의 위원, 실증특례 전문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속한 법인·단체 등에 재직한 경우

5. 위원회의 위원, 실증특례 전문위원 본인 또는 본인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회의 위원, 실증특례 전문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忌避)를 신청할 수 있고, 위원회의 위원, 실증특례 전문위원은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 때 기피 신청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회의 위원, 실증특례 전문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

제10조(의견청취) ①·② (생략) <신설>	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④ 위원장은 위촉한 위원회의 위원, 실증특례 전문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회의 위원, 실증특례 전문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회의 위원, 실증특례 전문위원이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위원회의 위원, 실증특례 전문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10조(의견청취)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실증특례 전문위원회는 실증특례 지정 여부 등에 관한 제반사
--	---

항 검토, 사전 의결 및 이의신청에 따른 재심의 사전 의결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 대상 신기술 및 규제 업무와 관련된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며, 사전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해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사무기구의 업무 등) ① .

② (생략)

제12조의3(첨단기술기업의 지정요건) ① 법 제9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분야"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야를 말한다.

1. (생략)
2. 기술집약도, 기술혁신 속도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 및 실증특례 전문위원 -----

-----.

<삭 제>

제12조의3(첨단기술기업의 지정요건) ①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

및 고부가가치 창출 효과 등을 고려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한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

<신 설>

② (생 략)

<신 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

3. 법 제16조의2제3항에 따라
실증특례를 지정 받은 기술
및 이를 통해 생산된 제품 및
서비스

② (현행과 같음)

제19조의2(실증특례의 신청) ①

법 제16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써 실증특례 신청일 기준 연구소, 교육시설, 본사, 영업소, 생산공장 등 기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연구개발특구 내에 소재한 자를 말한다.

1.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연구개발기관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및 그 외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관·단체로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② 실증특례를 신청하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실증특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실증특례에 관한 다음 각 목의 내용을 포함한 실증특례 계획서

가. 실증특례 대상이 되는 신기술의 명칭 및 내용

나. 신기술 실증의 범위, 추진 방법, 추진일정

다. 신기술 실증을 위하여 필요한 규제특례의 내용, 기간 및 관련 법령

라. 실증특례 신청자의 재정적·기술적 능력

2. 신청한 실증특례가 법 제16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설명하는 자료

3. 실증특례 신기술의 이용자 및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자(이하 “이용자 등”이라 한다)의 존재여부, 대상, 규모 및 보호 방법 등을 포함한 실증특례 안

전성 확보 계획서

4. 그 밖에 실증특례에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것으로서 과학
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요구하
는 자료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
2항에 따른 신청 내용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
2항 따른 신청(제3항에 따라 보
완된 경우를 포함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증특례 신청을 반려
할 수 있다.

1. 신청내용이 법 제16조의2제1
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한 경우

2. 제2항의 각 호의 서류를 제출
하지 않거나 제3항에 따른 보
완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
법으로 실증특례 신청 내용이
작성된 것이 명백한 경우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

1항에 따른 신청내용을 관계기관
의 장에게 통보해야 하며, 관
계기관의 장은 통보를 받은 해
당 신청내용을 검토하여 그 결
과를 30일 이내에 과학기술정보
통신부장관에게 문서로 회신해
야 한다. 다만, 관계기관의 장이
신청내용을 검토하기 위하여 실
증특례를 신청한 자에게 보완을
요구한 경우 보완에 걸린 기간
은 해당 기간에 산입하지 않되
이 경우에도 90일 이내에는 검
토결과를 회신해야 한다.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
2항에 따른 실증특례 신청 내용
이 이전에 승인된 실증특례 내
용과 동일·유사한 경우 실증특
례 지정까지의 기간을 단축하고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으며, 관
계기관의 장은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
한 사항 외에 실증특례의 신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
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
다.

<신 설>

제19조의3(실증특례 심사 기준 및 절차 등) ① 법 제16조의2제9항에 따른 실증특례의 세부 심사 기준은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다.

1. 신기술 실증 범위 및 실증 방법의 구체성

2. 신청자의 재정적·기술적 능력

3. 실증 신기술의 혁신성 및 파급효과 등

4. 실증 신기술의 이용자 등의 보호 및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처리 방안

5. 실증 신기술이 국민의 생명·안전·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

6. 그 밖에 전문위원회가 해당 신기술에 대한 실증의 특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법 제16조의2제8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과 기술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란 법 제2조제5호에서 정의된 공공연구기관, 「국가과학기술 경쟁

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서비스 신고기업과 그 밖에 실증특례의 지정을 위한 시험 및 검사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 및 기술을 갖추었다고 위원회가 인정한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③ 실증특례 전문위원회는 제9조의2제5항에 따른 사전 의결 결과를 사전 의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문서로써 알려야 한다. 이 때 부결시에는 부결의 사유 역시 함께 알려야 한다.

④ 신청자는 사전 의결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부결의 사유에 따른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⑤ 실증특례 전문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의신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의 사전 의결을 하여야 한다. 이 때 재심의 사전 의결 결과는 재심의 사전 의결일로부터 7일

<신 설>

이내에 신청자에게 문서로써 알려야 하며, 재심의 사전 의결 결과에 대해서는 이의신청할 수 없다.

⑥ 실증특례 전문위원회는 제5항에 따른 재심의 회의를 함에 있어 이의신청자에게 의견진술 등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전문가, 관련 부처의 공무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 및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실증특례의 신청, 통지 및 세부 심사기준, 이의신청 절차, 이용자 등에 대한 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다.

제19조의4(실증특례의 지정서의 발급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6조의2제3항 전단에 따라 실증특례의 지정을 받은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실증특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하며, 그 사실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1. 지정번호 및 지정 연월일
2. 상호(명칭) 및 대표자 성명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지정 대상 기술의 명칭
5. 실증특례 수행 지역
6. 실증특례의 주요 내용
7. 유효기간
8. 지정 조건

② 실증특례의 지정을 받은 자는
해당 신기술의 이용자 등이 있
을 경우 법 제16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실증
시작 전에 이용자 등에게 알려
야 한다.

1. 실증특례 대상인 신기술의
명칭 및 내용
2. 실증특례를 위한 구역·기간
및 규모
3. 법 제16조의2제3항 후단에
따라 안전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붙인 조건
4. 책임보험 또는 손해에 대한
배상 방안의 내용

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 규정한

<신 설>

사항 외에 실증특례의 지정서
발급 절차 및 내용에 관한 구체
적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정한다.

제19조의5(실증특례에 따른 책임
보험 등) ① 실증특례의 지정을
받은 자 중 해당 신기술의 실증
과정 중 이용자 등에게 인적·물
적 손해를 발생할 위험이 있는
경우 법 제16조의3제7항 본문에
따른 책임보험 등의 가입 사실
을 증명하는 자료를 신기술의
실증 시행 전까지 과학기술정보
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실증특례의 지정을 받은 자가
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경
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과
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
출해야 하고 실증특례를 시행하
기 전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별도 협의를 통해 손해
에 대한 배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1. 책임보험 가입이 불가능한
사유서

2.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신 설>

경우 배상기준·방법 및 절차를 포함한 이용자 손해배상계획서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인적·물적 사고에 대비한 손해배상의 범위 및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에 관해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9조의6(실증특례의 유효기간의 연장 등) ① 법 제16조의2제4항 전단에 따른 실증특례의 유효기간은 신청인의 신청기간 및 신청내용 등을 고려하여 2년 이내의 기간으로 한다.

② 법 제 16조의2제4항 후단에 따라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연장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그 사실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1. 실증특례 이용현황 및 활용 실적이 포함된 자료

<신 설>

2. 실증특례 연장 사유서 및 증빙서류

3. 제19조의3제7항에 따른 실증특례 지정서 사본

4. 책임보험의 보험기간 연장서류 또는 손해배상 연장 계획서

5.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실증특례 연장의 타당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19조의7(실증특례의 변경 등)

① 지정받은 실증특례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그 사실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1. 실증특례 이용현황 및 활용실적이 포함된 자료

2. 실증특례 변경 사유서 및 증빙서류

3. 제19조의3제7항에 따른 실증

<신 설>

특례 지정서 사본

4. 필요시 책임보험의 변경 서류 또는 손해배상 변경 계획서

5.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실증특례 변경의 타당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변경이 법 제16조의2제3항 후단에 따른 부가조건에 대한 변경일 경우, 실증특례의 지정을 받은 자가 규제관계기관의 장과 협의를 완료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이를 신고한 경우 실증특례의 지정을 받은 자는 위원회의 재의결을 생략하고 부가조건을 변경하여 신기술에 대한 실증을 수행할 수 있다. 이때 신고의 내용, 절차 등 구체적인 내용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다.

제19조의8(실증특례의 관리 및 감독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관계기관의 장은 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감독할 수 있다.

<신 설>

1. 실증특례 계획서 및 안전성 확보 계획서에 따른 계획 이행 여부

2. 실증특례 지정 조건의 이행 여부

3. 기타 실증특례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증특례의 관리 및 감독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정한다.

제19조의9(실증특례 결과보고 및 법령정비 등) ① 실증특례의 지정을 받은 자는 법 제16조의3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결과보고서를 증명자료와 함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관계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제출해야 한다.

1. 실증계획서에 따른 목적 달성 여부

2. 실증특례 지정조건 이행 여부

3. 신기술에 대한 실증 결과

<신 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관계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결과보고서와 증명자료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기간을 정하여 보완 및 추가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관계기관의 장은 법 제16조의3 제4항에 따른 법령정비 착수 및 완료 사실을 지체 없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실증특례의 지정을 받은 자에게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이 마련되었다는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제19조의10(실증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특구에서 원활하게 신기술 실증이 수행될 수 있도록 법 제16조의4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포함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 업무를 발굴 및 시행하여야 한다.

1. 기술이전 시작단계에서 추후 기술사업화 과정 중 발생될 수 있는 규제를 사전 검토하여 정

보 제공

2. 신기술 실증에 대한 시험·검
증 등의 효율적 수행에 필요한
기반 조성

3. 신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법
적·회계적 지원 및 지식재산권
보호

4.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신기술 실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
특구진흥재단(이하 "진흥재단"
이라 한다), 제5조제3항제1호에
따른 "공공연구기관으로서 과
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
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
및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기관·단체
로 하여금 법 제16조의4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위원회 및 실증특례 전문위
원회의 사무보조

2. 법 제16조의2제1항 각 호 외
의 부분 본문에 따른 신청 및

<신 설>

제4항 후단에 따른 연장신청의
접수

3. 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관리·감독에 관한 업무 지원

4. 그 밖에 실증특례 관련 업무
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과학
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
1항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게 한
경우 그 수행기관 및 수행업무
를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에 공고해야 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
1항 및 제3항에 따른 각종 지원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

제19조의11(실증특례 지정의 취
소) ① 실증특례의 지정을 받은
자가 법 제16조의5제1항제2호·
제3호·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6개
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부
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

회에 한하여 3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
1항에 따라 시정을 명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문
서로써 하여야한다.

1. 법 제16조의5제1항제2호·제3
호·제4호에 해당함을 알리는
내용

2. 시정명령 내용

3. 시정기간

4. 시정명령에 대한 불복 절차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시
정명령의 대상이 되는 실증특례
의 지정을 받은 자에게 사전에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
여야 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6조의5제2항에 따라 실증특
례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
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제19조의12(실증특례의 일시적 중
지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은 법제16조의5제2항에 따라 실

<신 설>

증특례의 지정을 받은 자가 실증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생명·안전에 위해가 발생하거나 현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실증특례 전문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해당 신기술의 이용 또는 제공 등에 대한 일시적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 등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다.

제24조(실시계획의 승인) ①·②
(생략)

③ 사업시행자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특구개발사업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승인받거나 변경승인받으려는 경우에는 실시계획(변경)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사업시행자와 실시계획의 승인권자가 같은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제24조(실시계획의 승인) ①·②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을 통하여 지적도(地籍圖)를 확인하여야 한다.

1.~12. (생략)

13. 제4항에 따라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하 "진흥재단"이라 한다)이 통보한 의견서

④~⑦ (생략)

제27조의2(개발이익의 재투자) ①
법 제32조의2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재투자하여야 하는 개발이익의 범위는 특구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100분의 25 이상 100분의 50 이하의 범위에서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정한다.

② (생략)

제42조(업무의 위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7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진흥재단에 위탁한다.

1. ~ 2. (생략)

<신설>

3. ~ 4. (생략)

1.~12. (현행과 같음)

13. -----진흥재단이 -----

④~⑦ (현행과 같음)

제27조의2(개발이익의 재투자) ①

----- 100
분의 20 이상 100분의 25 이하-----
-----.

② (현행과 같음)

제42조(업무의 위탁) (현행과 같음)

1. ~ 2. (현행과 같음)

2의2. 법 제16조의2, 제16조의3, 제16조의4, 제16조의5에 따른 실증특례에 관한 업무

3. ~ 4. (현행과 동일)

제43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 제) (생 략)	<삭 제>
---------------------------------	-------

< 의안 소관 부서명 >

지역과학기술진흥과	
연 락 처	044-202-4743